

## 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임석규 입니다.
- 2004년 1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, 2월 2일 제3차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
-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- 먼저,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
- 교육위원의 교육의정활동 과정에서 올바른 법령해석과 각종의안 심사시 법률적 자문을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
  - 교육위원회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등을 대비하고자 함입니다.
- 주요내용으로는
- 위촉기간은 2년이며, 대상인원은 2명이내서 의장이 위촉하며
  -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며
  - 사건처리부를 비치하여 자문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는 내용 등입니다.
-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.
-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의 교육의정활동 과정에서 올바른 법령해석과 각종의안 심사시 법률적 자문을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  - 다만, 기존에 교육·학예 등에 관한 법령해석과 자문에 대하여는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와 그 규정(규칙, 훈령)의 제정여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